

■ 공인유보 사유

① 신청업체가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하였으나,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② 신청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(수입부문에만 해당), ③ 신청업체가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(공인기준 일련번호 1.1.1부터 1.1.4까지에만 해당한다)의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, ④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심의를 위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,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■ 공인신청 기각사유

①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,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, ② 공인심사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, ③ 관세청장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,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(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한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 포함) 보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④ 신청업체가 법규준수의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현장심사를 마친 날부터 1년을 넘어서도 확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, ⑤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,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, ⑥ 공인유보업체를 재심사한 결과,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, ⑦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(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)으로 하락한 경우, ⑧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■ 관리책임자 교육시간

① 공인 전 교육 : 수출입관리책임자는 16시간 이상(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)
 ② 공인 후 교육 : 매 2년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,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(처음 교육은 공인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 받아야 함). 다만,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함

5과목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

■ 자유무역지역 구분 지구

① 생산시설지구, ② 지식서비스시설지구, ③ 물류시설지구, ④ 지원시설지구, ⑤ 공공시설지구, ⑥ 교육·훈련시설지구

■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

① 산업단지 : 산업동상자원부장관, ② 공항 및 배후지,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: 국토교통부장관, ③ 항만 및 배후지 : 해양수산부장관

■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의 수행 업무

①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
 ②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
 ③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
 ④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

■ 자유무역지역 청문 사유

① 입주계약 해지 시, ② 반입정지 시

이패스코리아 회원님께 드리는 선물

- ▶ **신규가입 선물**
이패스코리아 신규 가입 시 수강료 5% 할인쿠폰 지급
- ▶ **재방문회원 선물**
기존 회원 중 최근 12개월 미구매 회원에게 수강료 5% 할인 쿠폰 지급
- ▶ **보세사 응시생대상 특별이벤트**
유통관리사, 물류관리사, 원산지관리사, 무역영어, 국제무역사 과정 수강 시 50% 할인
 ✉ 이패스코리아 회원가입 후 고객센터 문의등록에 응시내역을 남겨주세요.

2023 무역자격증 대비반

- ▶ **[무역취보] 유통관리사2급 8월 대비**
 - 가산점 특화 유통자격증
 - 유일하게 고득점 합격 시 환급액 3배 지급
 - **무역자격증 0원패스 환급반 상시운영중**
 - 불합격 인증 시 다음 시험일까지 무료 수강연장!
- ▶ **무역 0원패스 환급반 수강료 0원 EVENT**
 - 수강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험 합격 시 수강료 환급!
 - 불합격 인증 시 다음 시험일까지 무료 수강연장 & 합격 시 환급 가능
- ▶ **이패스코리아 무역자격과정 특징**
 - **강사의 전문성** : 현업에 종사하는 관세사가 직접 집필한 교재로 강의합니다.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하는 핵심내용만 알려드려요!
 - **교재의 체계성** : 핵심이론과 문제풀이,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한 권으로 시험대비가 가능합니다.
 - **학습의 편리성** : 365일 고객센터 1:1상담 가능, 학습 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
 - **다양한 과정 구성** : 현금환급반, 대학생활인반, 패키지 과정 등 다양한 과정구성으로 필요한 강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무역전문가 트리플 & 더블

- ▶ **[무역트리플] 국제무역사 + 무역영어 + 외환2종**
수강기간 2년, 수강료 40%할인(318,000원), 이패스 제작교재 포함
- ▶ **[무역더블] 국제무역사 + 무역영어**
수강기간 1년, 수강료 40%할인(210,000원), 이패스 제작교재 포함
- ▶ **[무역더블] 보세사 + 원산지관리사**
수강기간 1년, 수강료 55%할인(399,000원), 이패스 제작교재 포함
- ▶ **[무역더블] 유통관리사2급 + 물류관리사(취업3종 강의 무료)**
수강기간 1년, 수강료 40%할인(330,000원)

과정정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은 홈페이지 <http://www.epasskorea.com> 상담전화 1600 - 0522

단독 시험에 나오는 핵/심/체/크

2023년 7월 1일(토)

보세사

이패스코리아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!



❖ 보세사 시험정보 ❖

- ▶ 시험 시간 : 7월 1일(토) 10:00 ~ 12:15
- ▶ 합격자 발표 : 8월 10일(목)

1과목 수출입통관절차

■ 용어의 정의

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은 그 선박 등의 국적으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구분하고, "반송"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송되는 것을 말한다. "내국물품"은 기본적으로 수입통관절차가 완료(수입신고 → 수리,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→ 반출,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→ 반출)된 물품을 말하며, "환적"과 "복합환적"은 관할세관이 동일인지에 따라 구분(환적 : 동일한 관할세관, 복합환적 : 상이한 관할세관)된다.

■ 내국세종의 부과·징수

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, 지방소비세, 담배소비세, 지방교육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농어특특별세(해당 세금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) 부과·징수한다. 해당 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■ 기간과 기한

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토요일 등 비영업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되며,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의 기한으로 한다.
 ① 납세신고를 한 경우 : 납세신고 수리일부 15일 이내
 ② 납부고지를 한 경우 :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
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: 수입신고일부 15일 이내

■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

① 수입물품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: 신고 수리일부 5년
 ② 수출물품 및 반송물품 관련 자료 : 신고 수리일부 3년
 ③ 보세화물 관련 자료 : 신고 수리일부 2년

■ 과세물건 확정시기

① 원칙 :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
 ② 예외 : ㉠ 특정 절차를 위반하여 과세하는 경우 : 해당 절차를 위반한 때, ㉡ 특정 상황이 발생하여 과세하는 경우 : 해당 상황이 발생한 때, 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: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

■ 납세의무자 -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경제적인 실질을 가지는 자

① 원칙 : 수입회주(수입회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㉠ 위탁자, ㉡ 상업승장 등에 적힌 물품수신인, ㉢ 수입신고 전의 양수인)
 ② 예외 : ㉠ 특정 절차를 위반하여 과세하는 경우 : 해당 절차를 위반한 자, ㉡ 특정 상황이 발생하여 과세하는 경우 : 해당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(운영인, 보관인 등), 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: 해당 물품을 반출한 자

■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등

①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: ㉠ 원칙 : 5년, ㉡ 예외 : 10년(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)
 ②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: 특정한 사실이 발생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

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

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제척기간 : ㉠ 관세 등이 5억원 이상 : 10년, ㉡ 5억원 미만 : 5년
 ②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: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
 ③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: ㉠ 납부고지, ㉡ 경정처분, ㉢ 납부독촉, ㉣ 통고처분, ㉤ 고발, ㉥ 공소제기, ㉦ 교부청구, ㉧ 압류
 ④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: ㉠ 관세의 분할납부기간, ㉡ 징수유예기간, ㉢ 압류·매각의 유예기간, ㉣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
 ⑤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: 5년

■ 담보의 종류

- ① 금전, ② 국채 또는 지방채, ③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, ④ 납세보증보험증권, ⑤ 토지, ⑥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·공장재단·광업재단·선박·항공기 또는 건설기계, ⑦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

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

- ①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, ②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,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, ④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, ⑤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, ⑥ 무상으로 입차하는 수입물품, ⑦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

■ 관세평가 1방법에서의 가산요소

- ① 수수료 및 중개료(구매수수료 제외), ② 용기비 및 포장비, ③ 생산지원비용, ④ 권리사용료, ⑤ 사후귀속이익, ⑥ 운임 및 보험료

■ 관세평가 1방법에서의 공제요소

- ① 수입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, ② 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하는 운임 및 보험료, ③ 수입 시 발생한 세금 등, ④ 연불이자

■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

- ①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,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,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(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외),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,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

■ 세액정정에 따른 효과

- ① 납부기한 : ㉠ 세액정정(당초의 납부기한), ㉡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(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), ㉢ 경정(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)
- ② 가산세 등 발생 : ㉠ 세액정정(가산세 미발생), ㉡ 보정신청(가산세 미발생, 보정이 자 발생), ㉢ 수정신고(가산세 발생), ㉣ 경정(가산세 발생)

■ 경정청구기간

- ① 통상적 경정청구 : 납세신고일부터 5년, ② 후발적 경정청구 :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, ③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: 해당 처분 등을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

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감면

- ① 기본면세범위 :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
- ② 별도면세범위 : ㉠ 술 : 2병(2병 합산하여 용량 2리터 이하,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), ㉡ 궤련담배(전자담배 포함) : 200개비, ㉢ 엽궤련담배 : 50개비, ㉣ 니코틴용액 전자담배 : 20밀리리터, ㉤ 기타 유형의 담배 : 110그램, ㉥ 향수 : 60밀리리터

■ 수입신고 생략 대상물품

- ①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(양수제한 물품 제외), ②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, ③ 장례를 위한 유해(유골)와 유체, ④ 신문, 뉴스를 취재한 필름·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, ⑤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, ⑥ 기록문서와 서류, ⑦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 [군함·군용기(전세기를 포함한다)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]

■ 수입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대상물품

- ①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, ② 해당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건품, ③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, ④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

■ 통관지세관 지정 물품

- ① 한약재(원료), ② 귀석과 반귀석(원석 제외), ③ 고철, ④ 해체용 선박, ⑤ 수산물(HS 0302호, 0303호, 0305호, 0305호는 염수장 한 것에 한함)⑥ 수입쇠고기 및 관련 제품, ⑦ 활어(관상용 및 양식용 제외), ⑧ 쌀, ⑨ 중고승용차

2과목 보세구역관리

■ 보세구역 장치물품

- ① 원칙 :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, ② 예외 : ㉠ 수출신고 수리 물품, ㉡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, ㉢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, ㉣ 검역물품, ㉤ 압수물품, ㉥ 우편물품

■ 운영인의 결격사유

- ① 능력제한자(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,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), ②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로서 해당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(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), ③ ①과 ②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

■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
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, ② 화물관리인이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③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·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, ④ 화물관리인이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
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

- ① 보세창고, 보세공장, 보세판매장 : 10년 이내, ② 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 :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

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수수료

- ①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 : ㉠ 보세판매장: 보세판매장별 연매출액, ㉡ 기타 : 연면적
- ②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: ㉠ 보세판매장 : 연 단위로 다음 연도 4월 30일, ㉡ 기타 : 분기 단위로 매분기말

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(보고 의무)

- ① 운영인의 결격사유 및 특허의 효력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, ② 도난, 화재, 침수,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, ③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이 선적서류,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포장 등에 표기된 물품과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, ④ 보세구역에 종사하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면직한 때, ⑤ 보세구역의 건물, 시설 등에 관하여 소방서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때

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(기타 의무)

- ① 업무내용의 변경 승인신청, ② 법인등기 사항의 변경통보, ③ 수용능력 증감 승인신청 또는 신고 및 수용능력 증감공사 준공 신고, ④ 폐업 등의 사항 보고·신고

■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등의 정지사유

- ①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, ②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, ③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④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이 합법가장 밀수를 인지하고도 세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보관 또는 반출한 때, ⑤ 세관장의 시설구비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보관화물에 대한 중대한 관리소홀로 보세화물의 도난, 분실이 발생한 때, ⑥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해당 보세구역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때, ⑦ 운영인이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

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사유
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, ②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(다만, 관세법 제17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) ③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(과징금 부과처분 포함)을 받은 경우, ④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⑤ 관세법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

■ 활어장치장의 시설요건

- ① 수조외벽 : 각각의 수조가 물리적·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구조와 재질, 수조 사이에 활어가 이동할 수 없도록 충분한 높이와 넓이를 보유,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: 각각의 출입구와 2개의 수조당 1대 이상 설치, 활어의 검량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CCTV를 1대 이상 보유, ③ 조명시설 : 세관장이 CCTV 영상을 통해 수조의 현황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시설 보유, 암실에 보관하여야 하는 어종을 장치하는 경우 적외선 카메라 보유, ④ 영상녹화시설 : CCTV 영상 상시 녹화 가능, 녹화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감시장비 보유, ⑤ 냉동·냉장시설 : 폐사어를 장치할 수 있는 냉동·냉장 보관시설 보유, ⑥ 인터넷망 구축 : 세관장이 CCTV 영상을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

3과목 보세화물관리

■ 보세구역의 장치기간

- ① 지정장치장 :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, 입항지(부산항, 인천항, 인천공항, 김해공항) 내의 지정장치장은 2개월(세관장은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) ② 특허보세구역 :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까지 장치 가능, ③ 종합보세구역 : 제한 없음(단,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), ④ 유치물품 및 습득물품 : 1개월(세관장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

■ 보세화물 장치기간 경과화물의 반출통고 주체

- ① 보세공장, 자가용 보세창고, 보세판매장 : 관할세관장, ② 지정장치장 : 화물관리인, ③ 영업용 보세창고 : 보세구역 운영인

■ 폐기명령 대상

- ①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, ②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, ③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, ④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, ⑤ 위조상품, 모조품,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, ⑥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, ⑦ 검사·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·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

■ 수의계약 사유

- ① 1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(단독 응찰한 경우를 포함한다)로서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, ② 공매절차가 종료된 물품을 국고귀속 예정통고 전에 최종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있을 때, ③ 부패, 손상,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, ④ 1회 공매의 매각예정가격이 50만원 미만인 때, ⑤ 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함이 공익에 반하는 때

■ 낙찰취소 사유

- ① 낙찰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대금잔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, ②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매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, ③ 공매낙찰 전에 해당 물품이 수출, 반송 또는 수입신고수리가 된 경우, ④ 착오로 인하여 예정가격, 공매조건 등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

■ 국고귀속 보류 사유

- ① 국가기관(지방자치단체 포함)에서 수입하는 물품, ②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고귀속 보류요청이 있는 물품, ③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물품, ④ 이의신청, 심판청구, 소송 등 장송이 제기된 물품, ⑤ 특수용도에만 한정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국고귀속 조치 후에도 공매낙찰 가능성이 없는 물품, ⑥ 국고귀속 조치를 할 경우 인력과 예산부담을 초래하여 국고에 손실이 야기된다고 인정되는 물품, ⑦ 부패, 손상, 실용시효가 경과하는 등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, ⑧ 그 밖에 세관장이 국고귀속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

■ 보세구역 외 장치 담보생략 기준

- ①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자재(농·축·수산물 제외), ② 무세물품(부가가치세 등 부과대상은 제외), ③ 방위산업용품, ④ 정부용품, ⑤ 재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, ⑥ 정부,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준정부기관그 밖의 공공기관, ⑦ 신용담보업체, 담보제공 특례자 및 담보제공 생략자, ⑧ 그 밖에 관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업체, 제조업체로서 세관장이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체

■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

- 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, ② 5천만원 이상의 인·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, 담보(부동산 제외)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한 자,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

■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

- 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, ② 2억원 이상의 인·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담보(부동산 제외)를 2억원 이상 제공한 자, ③ 유가화물자동차 10대 이상과 트랙터 10대 이상 보유한 자, ④ 임원 중 관세사 1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업체

4과목 수출입안전관리

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

- ① 법규준수, ② 내부통제시스템, ③ 재무건전성, ④ 안전관리

■ 공인요건(점수 기준)

- ① 법규준수도, 내부통제시스템 : 80점 이상
- ②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총족이 권고되는 기준 : 70점 이상